

2025년 가루쌀 가공 확대 지원사업 신청안내문

< 사업 개요 >

◆ 식품 가공업체 대상 가루쌀 원료 사용량 확대를 위하여

- ① '24년산 가루쌀 원료에 대해 가공비용 지원(200천원/톤, 조곡기준)
- ② 원료를 제분·가공하는 기업 지원을 통해 가루쌀 미분 등 가격하락을 유도하여 사용량 제고

□ 사업대상자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

■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상 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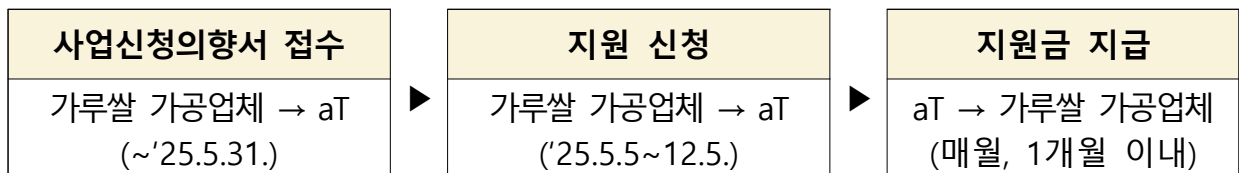
* 식품제조업(대분류코드 10)에 해당하는 사업체

- 곡물가공품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(105), 곡물가공품 제조업(1051), 곡물제분업(10512),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(10513),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(10519) 등

□ 지원 자격

- '24년산 가루쌀을 aT로부터 배정받아 제분·가공하는 업체
- '25년 aT 가루쌀 배정업무 시범운영 대상 제분사 및 가공업체

□ 사업 절차



□ 사업 신청의향 접수

- 목적 : 가공확대 지원 대상 물량 사전 파악 및 지원 희망업체 관리
- 접수기간 : ~'25. 4. 30.
 - aT 전략작물기획부 이메일로 제출 (이메일 주소 : garu@at.or.kr)
- 접수서류 : 사업신청의향서 1부
- 후속조치 : 사업 참여의향 제출업체 대상 정산기준 등 설명
 - * 단, 사업참여의향서 미제출업체도 가공확대 지원금 신청 가능

□ 지원 신청

- 사업자 공모 : 가루쌀 가공확대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(상시)
- 신청방법 : aT 전략작물기획부 이메일 제출(이메일 접수처 : garu@at.or.kr)
- 신청기간 : '25. 5. 5. ~ '25. 12. 5.
-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, 가루쌀 매입실적서, 가공 증빙, 판매 증빙, 가격인하 증빙 등
 - '25. 1. 1.부터 '25. 11. 30.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제출
- 지원금 지급 : 적격 여부 및 실적 검증 후 차월 정산액 지급(매월, ~12월)
 - ※ 업체별 신청금액의 합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 조정 가능

□ 지원 및 정산기준

○ 지원단가 : 가루쌀 조곡 1톤당 200천원(국고보조 50% 반영 금액)

- 현미 287천원, 백미 368천원

* 조곡 1kg는 현미 0.697kg, 백미 0.544kg

○ 지원한도액 : 업체별 연간 1,000백만원

- 기준단가에 구매량을 곱하여 최종 지급액 산정

< 계산식 예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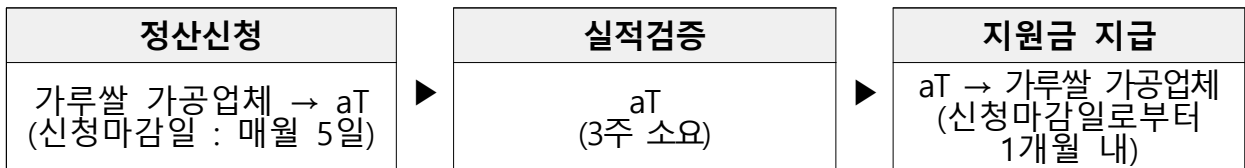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원)

구분	매입량(톤)	지원단가	정산액	지원한도	최종지원액
백미	5,000	368	1,840,000	1,000,000	1,000,000

○ 업체별 신청 금액의 합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금액 조정 가능

□ 매입실적 인정기간 : '25. 1. 1. ~ '25. 11. 30. (해당기간 내 지출완료건)

□ 지원금 정산절차



□ 지원금 제한대상

- 제출된 증빙의 부적격, 증빙 누락 등으로 객관적인 실적 입증이 어려운 물량
- '25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가루쌀 매입량
- 기타 타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루쌀 매입량(연구개발 등)

2025년도 가루쌀 가공확대 지원사업

사업참여의향서

회 사 명 :	
주 소 :	
담 당 자 :	
연 락 처 :	
연 간 매입계획물량 :	톤

위와 같이 2025년도 가루쌀 가공확대 지원에
참여의향이 있음을 제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업 체 명

대 표 (인감)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귀하

< 제출서류 목록 >

구 분	필수 제출서류	비 고
기본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신청서 · 사업자등록증 · 계좌정보 (통장사본 제출) * 사업자등록번호와 연계된 계좌로 보조금 수령 가능(개인 계좌 불가) 	
실적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매입 실적(전자세금계산서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매입거래 확인서(계약서 또는 약정서 또는 양곡인수지시서) * 곡종에 '바로미2'(또는 가루쌀)이 명시된 원물에 한해 인정 * 별도 거래확인서가 없는 경우, 첨부양식에 의거 제출 	*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또는 aT 발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물 매입 <생산자(농가)에서 직접 매입하는 경우> * 가루쌀 매입거래확인서 혹은 자사 계약서 * 해당 농가의 가루쌀 생산단지 참여농가 관련 서류 제출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5년 매입물량에 대한 대금증빙 * 거래처·거래일자가·거래금액이 명시된 계좌이체증(송금증) ** 거래처·거래일자가·거래금액이 명시된 카드영수증 *** 11월 내 계산서 발행되었으나, 대금 미지급건의 경우 최종 지원액 지급 전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인정함 **** 전자(세금)계산서와 송금 금액이 상이한 경우, 사유 명시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산 · 제품생산내역서(회사 자체시스템 출력본 등) * (용도)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함 	* 자사 자체시스템 출력, 없는 경우 aT와 사전 협의
판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분·가공물량에 대한 판매처 리스트 및 판매물량 제출 (회사 자체시스템 출력본 등) · 생산한 제품의 사진 및 제품 내 한글표시사항 사진 * (용도) 판매 제품의 가루쌀 함량을 확인하기 위함 ** 전·후면 모두 제출하며, 함량이 미표기된 경우 추가서류 제출 	* 양식3(엑셀) 및 자사 자체시스템 출력본, 없는 경우 aT와 사전 협의
가격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4, 25년도 판매가 증명을 위한 거래명세서 * (용도) 제품가격 인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가루쌀 사용량 및 가격 인하 등의 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 	

· 위 실적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필요